

도시관리계획(시설:하수도22호) 결정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906
----------	-----

제 출 일 : 2026. 3. 5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기존 진건하수처리시설 용량 한계와 주변 3기 신도시 등 급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평내동 산7-1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시설:하수도22호)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관계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

3. 주요내용

- 사업개요
 - 위 치 : 평내동 산7-10번지 일원
 - 부지면적 :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(A=25,455㎡)
 - 제 안 자 : 남양주시장(하수처리과)
- 주요 입안 내용
 -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22	하수도	공공하수 처리시설	평내동 산7-10번지 일원	25,455	-	소로3-112 소로3-113 중복결정

-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22	하수도	• 평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- 25,455㎡	• 3기 신도시개발에 따른 진건하수처리구역의 용량 한계 및 호평동·평내동일원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신설

○ 추진현황

- 2025. 10. 28. :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입안 요청
- 2025. 10. ~ 2026. 2. : 관련부서 협의 및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
- 2026. 1. 2. : 주민공람·공고

○ 향후 추진계획

- 2026. 4.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2026. 5. :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○ 관련도면

